

○ 연구개발 3년차 : 최종보고서

- 성능평가 결과물(공인시험성적서, 인증서 등)
- 신규 채용 및 고용유지 실적
-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, 사업화 실적(국내외 매출) 및 계획

5. 지원방법 : 직접지원(인건비, 여비 등) 및 간접지원(재료비, 분석료 등) 병행

6. 선정평가 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
기술성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(35) 정부 지원 필요성,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,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, 질적 우수 지 재권 창출 가능성,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■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(5)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,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,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
연구역량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(20) 연구책임자의 전문성·연구 윤리, 참여 연구진의 역량/역할의 구성, 연구 시설 장비 등 연구 인프라,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,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 정도
사업화 및 경제성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화 실적(15)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,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정성 ■ 사업화 계획 및 의지(10)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, 시장분석 및 표준화,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 전략의 타당성 ■ 경제성(15)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(기술이전 매출, 수익, 수입대체, 수출 효과, 고용 창출 등)

IV 지원 절차 및 일정



V 신청 및 접수

1. 신청기간 : 본 공고(2026년 1월 말 ~ 2월 초 중 공고 예정) 참조

2. 신청방법 :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
※ <https://www.ptp.or.kr> 알림 마당 - 사업공고 - 온라인 신청/접수
 ① 기업 회원가입(필수) → ② 기업정보 및 신청 정보입력 → ③ 첨부파일(신청 서식) 업로드 → ④ 내용 확인 후 신청/접수

3. 제출서류: 본 공고 시 확정·안내 예정

VI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

구분	주요 내용
지원 제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의 부도, 휴폐업인 경우 - 국제,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- 파산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*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면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- 직전년도 기준 결산 부채비율이 500% 이상 또는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 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 또는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-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-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-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동의서 등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
기타 유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- 선정평가 전 신청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며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- 지원대상의 적격성, 필요성, 사업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-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- 과제수행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간 중 중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-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반드시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승인 없이 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- 협약종료 후 일주일 이내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사업비 집행증빙(기업부담금 집행 증빙 포함)을 함께 제출해야 함 -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- TP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
VII 문언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전자메일
바이오사업본부	석아영	054-223-2784	natto0526@ptp.or.kr